

의안번호	제 96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월 10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960
------------	-----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가공·생산하고, 전시·판매·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인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준공('18. 6.)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시설이 완료된 가공시설 2동은 임대·운영 중에 있으며, 잔여용지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매각(분양)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산의 처분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 재산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1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3	공장용지	6,668.3m ²
2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1	공장용지	4,669.0m ²

- 매각시기 : 2022년 ~ 매각완료시까지
- 매각규모 : 2필지 11,337.3m²
- 재산가액 : 2,074,725천원정도(183천원 / m² 정도)

- 매수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승인을 받은 자
- 매각사유 :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수산식품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매각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2 , 천원)

2022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11,337.3	2,074,725				
	건물							
	기타							
1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3번지	6,668.3	1,220,298	2022~	산업시설용지 매각	입주승인을 받은 자	
	건물							
	기타							
2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1번지	4,669.0	854,427	2022~	산업시설용지 매각	입주승인을 받은 자	
	건물							
	기타							
3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관 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의 경우 : 2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페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